

## 직장기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시점

- 한·일·독·대만 4개국 중심으로 -

## 2021. 8.

┌────────────────────────────────────
Ⅱ.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중가요인 분석 8
Ⅲ. 보험료 부담 증가요인별 한·일·독·대만 4개국 비교 ···· 13
가. 건강보험료욜과 2017년 대비 인상률 비교 14
나. 보험료 부과기준 세부내용 비교
□ ♥ 시사점 ······ 24
<첨부1> 일본, 독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29
<첨부2> 일본, 독일, 대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2
<첨부3> 한·일·대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 배율 추이 비교 ······ 38

## 요 약

## 1. 직장기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현황

- □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년 54.0조원으로 '17년 42.4조원 대비 11.6조원 (27.3%) 증가하여 보험료 부담 급증
  - (부과체계)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3,400만원 초과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 ※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보수외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의미
  -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20년 53.4조원 으로 '17년 42.2조원 대비 11.2조원(26.6%) 증가
  -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년 6,253억원 으로 '17년 2,705억원 대비 3,548억원(131.2%) 증가
    - ⇒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 전체 보험료 대비 비중은 1.2%로 낮지만, 부담의 증가속 도가 매우 가파름.
  - (비중)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는 '20년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85.6% (지역가입자 14.4%)로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 이 직장가입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 ※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7년 7.9조원에서 '20년 9.1조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15.8%에서 '20년 14.4%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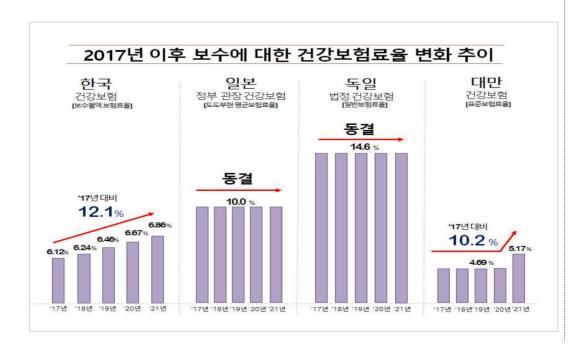
## 2.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분석

- □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고율 인상과 '18.7월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 부담 증가
  - ① (건강보험료율) '21년 6.86%로, '17년 6.12% 대비 12.1% 인상
  - 2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영향
    - ▶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21년 705만원으로, '17년 478만원 대비 47.5% 인상

- ▶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21년 19,140원으로 '17년 17,136원 대비 11.7% 인상
  - ⇒ 이로써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 격차(상한/하한)는 '17년 279배에서 '21년 368배로 더욱 확대
-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 기존 ('12.9월~'18.6월) '7,200만원 초과 소득자에서 '18.7월 이후 3,4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
- ▶ (소득월액 보험료율 인상) '21년 6.86%로 '17년 3.08% 대비 124.2% 인상
-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21년 352만원으로 '17년 239만원 대비 47.5% 인상

## 3. 보험료 부담 증가요인별 한 · 일 · 독 · 대만 4개국 비교

- 건강보험료율과 인상률 비교
  - ▶ (<del>수준</del>) '21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은 일본 10.0%, 독일 14.6%로 우리나라(6.86%)보다 높은 반면, 대만은 5.17%로 우리나라보다 낮음.
  - ▶ (인상률) 최근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일본, 독일, 대만은 최소 5년 이상\* 동일한 보험료율 유지
    - \* 일본은 '12년 이후 10년간, 독일은 '15년 이후 7년간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만은 '16~'20년 5년간 동결하였다가 재정 악화로 '21년 전년 대비 10.2% 인상



## 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교

	2021ե	<sup>년</sup> 국가별 건	!강보험료 부	·과기준 비교	1
코수월액 <u>.</u>	보험료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상한액 <b>(A)</b>	704.8 만원	141.3 만원	94.8 만원	86.2 만원
보험료	하한액 <b>(B)</b>	1.9 만원	5.9 만원	•	6.9 만원
ò	l한 대비 상한 <b>(A/B)</b>	368.2 배	<b>24.0</b> H	-	12.4 H
일은 소득구간별	보험료율 부담율이	상이하여 타 국가들과 동	일한 방식으로 보험료 하한을	을 구하기 어려움.	
소득월액 .	보험료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보험료	<sup></sup> 을	6.86%	미부과	미부과	2.11 %

## ▶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비교

- (수준) '21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우리나라가 705만원으로 일본 (141만원)의 5.0배, 독일(95만원)의 7.4배, 대만(86만원)의 8.2배에 달함.
- (인상률) 최근 4년('17~'21년) 간 우리나라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액은 47.5% 인상되었으나, 동 기간 독일 11.2%, 대만 9.2% 인상되었고, 일본은 큰 변화 없음.

## ▶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및 상·하한 격차 비교

- **(하한액 수준)** '21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우리나라가 19,140원으로 일본(58,980원)의 37.5%, 대만(69,294원)의 27.6%에 불과
- (상·하한 격차) '21년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액 대비 상한액 비율은 일본 24.0배, 대만 12.4배이나, 우리나라는 368.2배의 과도한 격차 발생

##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여부 및 보험료율 비교

- (부과 여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고 일본, 독일에는 없음.

- (소득월액 보험료율) 소득월액 보험료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부과기 준이 매우 상이하여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료율만 놓고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6.86%로 대만의 2.11%에 비해 3.3배 높음.
- **(소득월액 보험료율 인상률)** 우리나라는 최근 5년('17~'21년) 간 124.2% 인상되었으나 대만은 동 기간 10.5% 인상

## 4. 시사점

### □ 건강보험료율의 안정화와 보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자동인상분이 발생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건강보험료율 조정은 중장기적 경제 상황과 건보재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 일본은 매년 보험료율을 변경하지만 2012년 이후 평균 보험료율의 큰 변화 없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며, 독일은 건강보험료율을 5~10년 단위로 지속가능한 성장률(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
-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입자, 공급자, 공익·정부 제시안과 논의 경과 및 최종 표결 결과 등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

##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 조정 등 부과체계 합리화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368.2배로 일본 24.0배, 대만 12.4배에 비해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이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상·하 한액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
  - 우리나라의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보험 수혜자와 부담자의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수혜자 과다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 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수혜자와 부담자 간의 갈등 야기

- \*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보험 수혜자와 부담자 간 불일치 현상 심각
- 특히, 우리나라 보수월액 보험료율은 일본 독일보다 낮지만,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보험료 상한액 탓에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보험료 역전현상도 발생
  - [Case 1] '21년 월 1,382만원(연 1억 6,584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우리 나라 근로자가 동일한 소득의 독일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 납부
  - [Case 2] '21년 월 2,060만원(연 2억 4,726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가 동일한 소득의 일본, 독일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5만원) 은 소득재분배 수준을 넘어 일부 근로자(고소득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야기(17년 이후 보험료 상·하한 격차 더욱 확대)하고 있으므 로, 선진국의 건강보험 상한액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
  - ※ 우리나라의 '21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 705만원은 일본(141만원)의 5.0 배, 독일(95만원)의 7.4배, 대만(86만원)의 8.2배에 달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
  - ※ '21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상한액/하한액)가 일본 24배, 대만 12.4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370배에 달해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상한액을 조정해 격차를 줄일 필요
- 이외 일본·독일은 부과하지 않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도 계획된 부과대상 확대를 재검토하고, 대만보다 3.3배 높은 소득월액 보험료 율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
  - \* 현재 '연 3,400만원 이상'에서 '22.7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자로 건강보험료 부과 확대 예정

## □ 국고지원 상시화 및 규모 확대를 통한 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

-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 수준도 확대하여 정부 책무를 강화할 필요
  - ※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2%로 일본 27.4%('17), 프랑스 52.3%('18), 대만 23.1%('1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싙.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현황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3,400만원 이상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로 산정,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법정상한 8.0% 범위 내에서 결정
    - \* 보수의 범위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제외)

#### (예시 1) 보수월액 보헊료 계산

- 연 6,000만원, 월 50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 ⇒ 월 343,000원 납부
  - ▶ (6.000만원 ÷ 12개월) \* 보험료율 6.86% = 343.000원
  - ⇒ 월 보험료 343.000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
- (소득월액 보험료) 3,400만원 이상의 보수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수외 소득의 크기, ▲공제금액, ▲소득종류별 비율, ▲ 해당연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으로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기타소득(강의료, 당첨금 등) 등 종합과세소득을 의미

#### (예시 2)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식 : [(연간 보수외 소득 공제금액) ÷ 12개월] × 소득 종류별 금액 비율(소득평가율)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 이자·배당소득 5,000만원(A), 연금소득 4,000만원(B) 등 연간 총 9,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월 22만 536원 납부
  - ① 공제금액을 적용한 월 보수외 소득 계산 [(5,000만원 + 4,000만원) - 3,400만원] ÷ 12월 ≒ 4,666,667원
  - ② A, B가 차지하는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A, B의 소득월액 계산
  - 이자·배당소득 소득월액 = 466.7만원 × 5/9 × 100%\* ≒ 2.592.593원
  - 연금소득 소득월액 = 466.7만원 × 4/9 × 30%\* ≒ 622.222원
  - \* 소득월액 계산 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비율을 감안한 보수외 소득 전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비율을 감안한 보수외 소득의 30%만 반영
  - ③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2,592,593 + 622,222원) × 6.86% ≒ 220,536원

⇒ 월 22만 536원을 근로자가 전액 부담

##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현황

- **(수준)**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년 54.0조원으로 '17년 (42.4조원) 대비 11.6조원 (27.3%) 증가하여 보험료 부담 급증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대한 보험료인 '보수월액 보험료'는 '20년 53.4 조원으로 '17년 (42.2조원) 대비 11.2조원 (26.6%) 증가
  -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는 '20년 6,253 억원으로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2%에 불과하지만, '17년 (2,705억원) 대비 131.2%(3,548억원) 증가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비중)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년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85.6%(지역가입자 14.4%)에 달해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84.2%에서 '20년 85.6%로 상승
  -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비중은 '17년 15.8%에서 '20년 14.4%로 감소

〈표 1〉 2017년 이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부담 현황 추이

(단위: 억원, %)

7	분	2017	2018	2019	2020	2017년 대비 인상률
건강!	보험료	504,168	538,965	591,328	631,114	25.2
즈	l장가입자 (비중)	424,486 (84.2)	459,221 (85.2)	507,712 (85.9)	540,194 (85.6)	27.3 ( - )
	보수월액 보험료	421,782	455,312	501,953	533,941	26.6
	소득월액 보험료	2,705	3,909	5,758	6,253	131.2
X	  역가입자 (비중)	79,682 (15.8)	79,744 (14.8)	83,616 (14.1)	90,921 (14.4)	14.1

주 : 결산기준, 비중은 전체 건강보험료 대비 직장/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비중

자료: 건강보험공단

##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분석

2017년 이후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증가 요인									
보수월액	보험료	2017년		2021년	2017년 대비 증감율				
보험료	<sup>2</sup> 율	6.12%	매년 인상	6.86 %	12.1% 🛖				
보험료	월 상한액	478.4 만원	'18.7월 부과	704.8 만원	47.5 % 👚				
	월하한액	<b>17,136</b> 원	체계 개편	<b>19,140</b> ଥ	11.7%				
소득월액	보험료	2017년		2021년	2017년 대비 증감율				
보험료	율	3.12%	'18.7월 부과	6.86 %	124.2 % 👚				
월 보험료	e 상한	23.9 만원	체계 개편	<b>35.2</b> 만원	47.5 %				

## □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변화

- **1** (건강보험료율) '21년 6.86%로 '17년 6.12% 대비 12.1% 인상
  - (인상원인)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율 결정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는 '17년 이후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보험료율 인상 결정
    - \* [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상효과) 건강보험료는 소득 대비 '정률'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임에도 매년 보험 료율까지 인상하고 있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급증

#### 〈표 2〉 2017년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보험료율	6.12	6.24	6.46	6.67	6.86	12.1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1.96)	(3.53)	(3.25)	(2.85)	_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경총 자료 재가공

- ② (건강보험료 상한액) '21년 705만원으로 '17년 478만원 대비 47.5% 인상
  - ('18.7월 이전) 보수월액 상한액이 7,810만원\*으로 고정되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율 인상에만 영향을 받음
    - \* '10년 기준 전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상응하는 수준 ; '17년 보수월액 상한액 7,810만원, 건강보험료율 6.12%를 고려할 때 '17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478.0만원
  - ('18.7월 이후)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전전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외에 임금인상에 따른 평균 보험료 증가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도 변화 이전보다 인상폭 확대

예) '21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월 704.8만원

#### 〈표 3〉 2017년 이후 보수윌액 보험료 상한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78	2017	2018		2010	2020	2021	2017년 대비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2017년 네미 인상률
월 보험료 상한액	478.0	487.3	619.3	636.6	664.4	704.8	47.5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1.96)	(27.08)	(2.78)	(4.38)	(6.07)	_

- 주 1. 인상률은 전년 대비 인상률 수치 (\*18.7~12월 월보험료 상한액 인상률은 1~6월 대비 인상률)
  - 2. '17년, '18.1~6월 월 보험료 상한액은 보수월액 상한액 7,810만원 x 해당기간 보험료율로 계산, 그 외 보험료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활용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경총 자료 재가공

- (인상효과)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인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상한 액도 최근 4년간 47.5% 인상되면서 건보료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의 건보료 추가 부담 급증

#### (예시 3) 상한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사례

- 월 1억원(연 12억원) 수령 근로자의 '17년, '21년 보수월액 보험료율 비교
  - ① 2017년 ⇒ 월 478만원 부담
    - 근로소득(월 1억원)이 '17년 보수월액 상한액(7,810만원)을 상회하여 상한 적용
    - 월 7.810만원 × '17년 보험료율 6.12% = 월 4.779.720원
  - ② 2021년 ⇒ 월 686만원 부담 ('17년 대비 43.5% 인상)
    - 월 1억원 × '21년 보험료율 6.86% = 6,860,000원
    - '20년 보험료 상한액은 7,047,900원으로 상한 미적용
- **③** (건강보험료 하한액) '21년 1.9만원으로 '17년 1.7만원 대비 11.7% 인상
  - ('18.7월 이전) 보수월액 소득이 28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수월액 28 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18.7월 이후**)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0.08~0.085% 범위'로 설정
  - (인상효과) 개편 당시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다소 낮아졌으나, 이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인상과 연동되어 매년 부담 증가. 다만, 상 한액에 비해 낮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상·하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 〈표 4〉 2017년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변화 추이

(단위: 원,%)

<b>7</b> H	0047	2018		0010	0000	0004	2017년 대비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2017년 대미 인상률
월 보험료 하한액	17,136	17,472	17,460	18,020	18,600	19,140	11.7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1.96)	(-0.07)	(3.21)	(3.22)	(2.90)	-

주 1. 인상률은 전년 대비 인상률 수치 ('18.7~12월 월보험료 상한액 인상률은 1~6월 대비 인상률)

2. '17년, '18.1~6월 월 보험료 하한액은 보수월액 하한액 28만원 x 해당기간 보험료율로 계산, 그외 보험료 하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활용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경총 자료 재가공

#### 〈표 5〉 2017년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액 격차 비교

(단위 : 원, 배)

구분	0017	20	018	2010	2020	2021
一个正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상한액 (A)	4,779,720	4,873,440	, ,	6,365,520	6,644,340	7,047,900
하한액 (B)	17,136	17,472	17,460	18,020	18,600	19,140
하한 대비 상한 비율 (A/B)	278.9	273.6	354.7	353.2	357.2	368.2

## ② 보수외 소득(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변화

- ① (부과대상 확대) '12.9월 이후 7,200만원 초과 소득자에서 '18.7월 이후 3,400만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22.7월 이후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도 보험료 부과 예정)
  - ('18.7월 이전) '12.9월부터 '18.6월까지 7,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 ('18.7월 이후) '18.7월 이후 3,400만원('22.7월 이후 2,000만원)을 초과 하는 보수외 소득으로 부과대상 금액을 하향 조정
  - (인상효과) 납부대상 소득기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월액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 급증
- ② (소득월액 보험료율 인상) '21년 6.86%로 '17년 3.08% 대비 124.2% 인상
  - ('18.7월 이전)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였으나,
  - **('18.7월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100%'로 인상
  - (인상효과)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 급증

#### 〈표 6〉 2017년 이후 소득월액 관련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b></b>	0047	2018		0010	2222	0004	004714 51111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보험료율	3.06	3.12	6.24	6.46	6.67	6.86	124.2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1.96)	(100.0)	(3.53)	(3.25)	(2.85)	-

- 주 1. 인상률은 전년 대비 인상률 수치 ('18.7~12월 월보험료 상한액 인상률은 1~6월 대비 인상률)
  - 2.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18.7월 이전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였으나, '18.7월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100%로 변경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 경총 자료 재가공

- **③**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21년 352만원으로 '17년 239만원 대비 47.5% 인상
  - ('18.7월 이전)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상한은 '10년 평균 보험료의 30배(7,810만원) ×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였으나,
  - ('18.7월 이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15배 ×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100%로 상향 조정
  - (인상효과) 부과기준 변경,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보험료 상한액 인상 폭이 확대되면서 부과 대상자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도 빨라짐.

#### 〈표 7〉 2017년 이후 소득월액 보험료의 윌 상한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b></b>	0017	2018		0010	2222	0004	001713 []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월 보험료 상한액	239.0	243.7	309.7	318.3	332.2	352.4	47.5
(전년대비 <u>인</u> 상률)	(동결)	(1.96)	(27.08)	(2.78)	(4.38)	(6.07)	_

- 주 1.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18.7월 이전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였으나 '18.7월 이후 보수월액 보 험료율의 100%로 변경
  - 2. '17년, '18.1~6월 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보수월액 상한액 7,810만원 x 해당기간 보험료율로 계산, 그 외 보험료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경총 자료 재가공

## 비교대상국가 선정기준

-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재원을 사회보험료로 조달하고 재정을 통합 관리하는 일본, 독일, 대만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
  - ▶ 일본은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하는 '정부 관장 건강보험', 독일은 재정이 통합 관리되는 '법정 건강보험' 기준으로 비교\*
    - \* 독일, 일본은 '사회보험+조합주의' 방식이나, 위 유형만 보면 우리 건강보험과 매우 유사

#### 〈 국가별 건강보험 재원조달 및 보험 관리방식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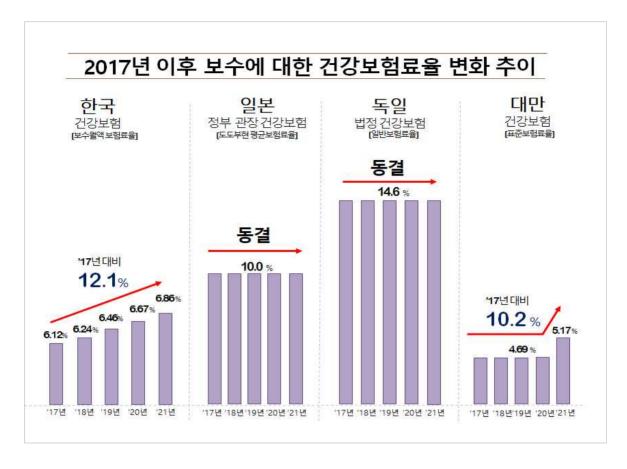
			3	건강보험 재원조달 유형	
	구동	Ł	보험료	준조세	조세
			재원조달 연대성 중요		재원조달 형평성 중요
건강 보험	조합 방식	조합내 연대성 중요	일본	프랑스 (재원의 다각회)	
관리 방식	통합방식	전국민 형평성 중요	독일 (재정통합) 한국 대만 (추가보험료 부과)		영국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2017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에 대한 비교

- 각국 건강보험법령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율, 보험료 상한액 등에 대한 단순비교 가능
  - ▶ (한국)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에서 퇴직금, 번역료, 비과세근로소득 등을 제외
  - ▶ (일본) '보수'는 임금, 월급, 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모든 것에서 임시로 받는 것과 3개 월이 넘는 기간마다 받는 것 등을 제외
  - ▶ (독일) 보험에 가입하게 된,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보수
  - ▶ (대만) 급여소득(payroll)

## 가. 건강보험료율 수준과 2017년 대비 인상률 비교



## 1 2021년 건강보험료율 수준 비교

- **(수준)** '21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은 우리나라(6.86%)가 일본 (10.0%), 독일(14.6%)보다 낮고, 대만(5.17%)보다 높으나, 이러한 보험료율 차이는 국가별 1인당 의료비 격차와 비슷한 수준
  -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보수'에 대한 평균 보험료율은 '21년 10.0%이고 1인당 경상의료비는 4,169달러('17년)로, 우리나라 대비 각각 145.8%, 182.6% 수준
  - (독일) 법정 건강보험의 일반보험료율은 '21년 14.6%이고 1인당 경상 의료비는 5,033.5달러('17년)로 우리나라 대비 각각 212.8%, 220.5% 수준
  - (대만) 표준보험료율은 '21년 5.17%이고, 1인당 경상의료비는 1,489달러 ('17년)로 우리나라 대비 각각 75.4%, 65.2% 수준

〈표 8〉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율, 1인당 경상의료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대만
건강보험료율 (2021년 기준)	6.86%	10.0%	14.6%	5.17%
(우리나라 대비)	-	(145.8%)	(212.8%)	(75.4)
1인당 경상의료비 (2017년 기준)	2,283.1달러	4,169달러	5,033.5달러	1,489달러
(우리나라 대비)	_	(182.6%)	(220.5%)	(65.2%)

주 1. 우리나라 보수월액 보험료율,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율, 독일 법정 건강보험 일반보 험료율(조합별 추가보험료 제외), 대만 건강보험 표준보험료율 기준

자료 : (보험료율) 보건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 강보험국 ; (경상의료비) 통계청 1인당 경상의료비(Worldbank), 코트라 자료 인용

- **(보험료율 상한)**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각각 보수의 8.0%, 13.0%, 6.0%를 보험료율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상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 (분담비율) 우리나라 건강보험,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독일 법정 건 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는 반면, 대만 은 노사정이 각각 30%, 60%, 1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대만의 건강보험 유형 중 Category I 피고용자(Employees of public or private owned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의 분담비율 기준이며, 개인별 보험료 산정 시 최대 3인의 피부양자수(사업주, 정부는 평균 피부양자수)를 반영하는 관계로 실제 분담비율은 상이할 수 있음.

〈표 9〉 2021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율 및 노사분담비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보험료율	6.86%	10.0%	14.6%	5.17%
(우리나라 대비)	_	(145.8)	(212.8)	
보험료율 상한	8.0%	13.0%	_	6.0%
분담비율	노사 1/2씩	노사 1/2씩	노사 1/2씩	노사정 30: 60: 10

주 : 우리나라 보수월액 보험료율,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율, 독일 법정 건강보험 일반보 험료율(조합별 추가보험료 제외), 대만 건강보험 표준보험료율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sup>2.</sup>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지출한 총액을 의미

## 2 2017년 이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비교

- **(인상률)** 우리나라와 대만은 '17년 이후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12.1%, 10.2% 인상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 동결
  - (일본) 47개 도도부현 평균 보험료율은 '17년 이후 보수의 10.0%로 변화 없음\*.
    - \* 실제 47개 현의 보험료율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17~'20년 10.02%, '21년 10.01%로 소폭 인하되었으나, 건강보험협회에서 평균 보험료율을 10.0%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활용
  - (독일) 법정 건강보험의 일반보험료율은 '17년 이후 14.6%로 동결 ※ 건강보험료율 중 기업부담분 7.3%는 '11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
  - (대만) 표준보험료율(standard premium)은 '17~'20년 4년간 4.69%로 유지되다가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21년 5.17%로 전년대비 10.2% 인상
    - ※ 대만 표준보험료율은 '95년 4.25%, '02년 4.55%, '10년 5.17%로 증가하다가 '13년 4.91%, '16년 4.69%로 낮춘 바 있음.

#### 〈표 10〉 2017년 이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율 변화 비교

(단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한국	6.12	6.24	6.46	6.67	6.86	12.1	
일본			10.0			동결	
 독일		14.6					
대만		10.2					

- 주 1. 우리나라 보수월액 보험료율,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율, 독일 법정 건강보험 일반 보험료율(조합별 추가보험료 제외), 대만 건강보험 표준보험료율 기준
  - 2. 독일은 공적 건강보험료율 외에 조합별 재정상황에 따라 추가보험료율이 부과되나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과 달라 제외

지료: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保険料率の変遷(21.5); 독일 연방정부 Beitragsbemessungsgrenzen(법령 고시 참고);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全民健康保險年報, 연도별

- (인상 주기)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었으며, 일본, 독일, 대만은 최소 5년 이상 동일 보험료율 유지
  - (일본) 정부 관장 보험료율은 매년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나, '12년부터 47개 도도부현의 평균 보험료율이 보수의 10.0%로 유지될 만큼 매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음.
  - (독일) 5~10년 단위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며, 일반보험료율은 '15년 이후 현재까지 보수의 14.6%를 유지 중
  - **(대만)** 표준보험료율은 '16년 기존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16~'20년 5년간 동결하다가 '21년 5.17%로 인상

## 나. 보험료 부과기준 세부내용 비교

	2				
보수월액	보험료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상한액 <b>(A)</b>	704.8 만원	141.3 만원	94.8 만원	86.2 만원
월 보험료	하한액 <b>(B)</b>	1.9 만원	5.9 만원	•	6.9 만원
đ	하한 대비 상한 <b>(A/B)</b>	<b>368.2</b> 배	<b>24.0</b> 배	•	<b>12.4</b> H
※ 독일은 소득구간별	보험료 <mark>율 부</mark> 담율이	상이하여 타 국가들과 동	일한 방식으로 보험료 하한을	을 구하기 어려움.	
소득월액	보험료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보험	로율	6.86%	미부과	미부과	2.11 %

##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 비교

○ (수준) '21년 보수에 대한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우리나라가 705만원으로, 일본(141만원)의 5.0배, 독일(95만 원)의 7.4배, 대만(86만원)의 8.2배에 달함.

-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은 '21년 월 139 만엔으로 평균 보험료율 10.0%를 활용하여 계산한 건강보험료 상한액 은 '21년 월 141만원 (13만 9,000엔)
- (독일) 법정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은 '21년 월 4837.50유 로로 일반보험료율 14.6%를 활용하여 계산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21년 월 95만원 (706.275유로)
- (대만)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은 '21년 월 18만 2,000 대만달러로 표준 보험료율 5.17%를 활용하여 계산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21년 월 86 만원 (2만 1,698 대만달러)

〈표 11〉 2021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상한액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대만
건강보험료 상한	705만원	141만원	95만원	86만원
각 나라 대비 우리나라 수준	_	5.0世	7.4₩	8.2배

주 1.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율, 독일 법정 건강보험 일반보험료율(조합별 추가보험료 제외), 대만 건강보험 표준보험료율과 피부양자 3인 기준

2. 환율은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 상의 '21.4월말 환율 이용

자료 : 보건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 **(인상률)** 최근 4년('17~'21년)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의 경우 일본은 큰 변화가 없었고, 독일 11.2%, 대만 9.2% 인상되었으나, 우리나라는 동기가 47.5% 인상
  - (일본) 보험료 부과소득(표준보수월액) 상한액\*은 '16년부터, 평균 보험료율은 '12년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16년이후 141만원으로 동결
    - \* 표준보수월액 상한액은 '16.4월 47등급 121만엔(1,230만원)에서 50등급 139만엔 (1,413만원)으로 상향 조정

- (독일) 매년 근로자 임금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을 변경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17년 85만원(635.1유로)에서 '21년 95만원(706.3유로)으로 11.2% 인상
  - \* 부과소득 상한액(유로) : ('17년) 4,340.0 ('18년) 4,425.0 ('19년) 4,537.5 ('20년) 4,687.5 ('21년) 4,837.5
- (대만) 보험료 상한액은 '17년 이후 월 78~79만원\*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1년 표준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86만원으로 상승
  - \* 대만의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은 '10~'21년 11년간 1만 8,200 대만달러로 유지되고 있으나, 개인별 보험료 산정 시 최대 3인의 피부양자수(사업주, 정부는 평균 피부양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미세한 수치 변화가 있음.
  - \* 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최고 보험료액을 산정하기 위해 피부양자수 반영 최대치인 3인을 가정하여 산출됨.

#### 〈표 12〉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상한액 변화 추이 비교

(단위: 만원)

		20	18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한국	478	487	619	637	664	705	47.5%
일본			14	41			변화 없음
독일	85	8	87		92	95	11.2%
대만		7	9		78	86	9.2%

- 주 1. 우리나라는 보험료 상한이 고시되므로 이를 활용
  - 2. 일본은 표준보수월액이 제시되므로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보험료 상한액 계산
  - 3. 독일은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보험료 부과 상한액이 제시되므로 일반보험료율을 감안하여 보 험료 상한액 계산,
  - 4. 대만은 피부양자 반영 최대치인 3명을 가정하여 산출, 기업과 정부 부담분은 피부양자수 대신 평균 부양인구수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16~'19년은 0.61인 '20년 이후 0.58인이어서 보험료 상한액이 다소 변동
  - 5. 환율은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 상의 '21.4월말 환율 이용(보수월액 상한, 보험료 상한을 보다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 환율 미활용)
- 자료: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都道府県毎の保険料率, 都道府県毎の保険料額表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Beitragsbemessungsgrenzen 보도자료,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全民健康保険年報

## ②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하한액 및 상·하한 격차 비교

- (수준) '21년 보수에 대한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보수월액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우리나라가 19,140원으로, 일본(58,980원)의 37.5%, 대만 (69,294원)의 27.6%에 불과
  - ※ 독일은 하한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소득구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상이하여 하한선을 특정하기 어려움.
  -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소득 하한액은 '21년 월 58,000엔으로 평균 보험료율 10.0%를 활용하여 계산한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1년 월 58,980원(5,800엔)
  - (대만) 보험료 부과소득 하한액은 '21년 월 24,000 대만달러로 표준보 험료율 5.17%를 활용하여 계산한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21년 월 69,294원(1,745 대만달러)

〈표 13〉 2021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하한액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건강보험료 하한	19,140원	58,980원	69,294원
각 나라 대비 우리나라 수준	_	37.5%	27.6%

주 1.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율, 대만 건강보험 표준보험료율 및 부양가족 없음 기준

2.. 환율은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 상의 '21.4월말 환율 이용

자료: 보건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 **(인상률)**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하한액의 최근 5년(2017~2021) 간 인상률은 우리나라 11.7%, 대만 24.1%이었고, 일본은 변화 없음.
  - (일본) 보험료 부과소득(표준보수월액) 하한액이 2007년부터, 평균 보험료율은 2012년부터 변화없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012년이후 58,980원으로 동결

- (대만) 보험료 부과소득 하한액이 매년 인상\*되었고, '21년 표준보험 료율이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7년 55,848원에서 '21년 69,294원으로 24.1% 인상
  - \* 대만 보험료 부과소득 하한액(대만달러) : ('17년) 21,009 ('18년) 22,000 ('19년) 23,100 ('20년) 23,800 ('21년) 24,000

#### 〈표 14〉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하한액 변화 추이 비교

(단위: 만원)

	2217	20	18	0040		2021	001713 []]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19 2020		2017년 대비 인상률
 한국	17,136	17,472	17,460	18,020	18,600	19,140	11.7%
 일본		58,980					동결
대만	55,848	58,	483	61,407	62,337	69,294	24.1%

- 주 1. 우리나라는 보험료 하한액이 고시되므로 이를 활용
  - 2. 일본은 표준보수월액이 제시되므로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보험료 하한액 계산
  - 4. 대만은 보험료 계산에 피부양자수가 반영되므로 하한은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
  - 5. 환율은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 상의 '21.4월말 환율 이용(보수월액 하한, 보험료 하한을 보다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 환율 미활용)

자료 : 보거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 **(상·하한 격차)** 2021년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하한액 대비 상한액이 각각 24.0배, 12.4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368.2배에 달해 과도한 격차 발생

# ※ 2017년 이후 한일대만의 보수에 대한 보험료 상하한액 배율 추이 비교는 [첨부3] 참조

⟨丑	15>	2021년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상.	하한액	비교
----	-----	-------	-----	----	-------	----	-----	----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상한액	7,047,900원	1,413,491원	861,848원
하한액	19,140원	58,980원	69,294원
하한액 대비 상한액 수준	368.2배	24.0배	12.4배

- 주 1.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 평균 보험료율, 대만 건강보험 표준보험료율, 상한은 피부양자 3인, 하한은 부양가족 없음 기준
  - 2. 화율은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통계 상의 '21.4월말 환율 이용

자료 : 보건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 ③ 보수외 소득(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보수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소득월액)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고, 일본과 독일에는 없음.
- 우리나라와 대만은 건강보험의 수입기반 안정화, 가입자 간 실질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근로소득 이외의 일정 수 준 이상 배당·이자·임대 등의 수입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과
  - 우리나라는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여 '12.9월에 도입했으며, 대만은 '추가보험료(supplementary premium)'라고 하여 '13년 도입

〈표 16〉 보수외 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및 2021년 보험료율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부과 여부	0	×	×	0
보험료율	6.86%	X	×	2.11%

자료 : 보건복지부,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 4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수준과 인상률 비교

- **(수준)** 우리나라의 보수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대만의 2.11%에 비해 3.3배 높음.
  - 우리나라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21년 6.86%로, 보수에 부과하는 건강보 험료율과 동일
  - 대만의 추가보험료율은 '21년 2.11%로, 보수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 5.17%의 40.1% 수준
- **(인상률)**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의 경우 대만은 최근 5년('17~'21년)간 10.5% 인상한 데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동 기간 124.2% 인상
  - 우리나라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지속된 인상, 보험료율 기준 변화\* 등으로 '17년 3.06%에서 '21년 6.86%로 124.2% 인상

- \* '12.9월~'18.6월까지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를 유지하다 '18.7월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100%로 상향 조정
- 대만의 추가보험료율은 추가보험료가 도입된 '13년 2.0%였으나, '16년 1.91%로 하향 조정되어 '20년까지 5년간 유지되다가 '21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2.11%까지 인상

#### 〈표 17〉 2017년 이후 소득월액 관련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2018						
구분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2017 대비 인상률
한국	3.06	3.12	6.24	6.46	6.67	6.86	124.2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1.96)	(100.0)	(3.53)	(3.25)	(2.85)	-
대만			2.11	10.5			
(전년대비 인상률)			동결			(10.5)	-

- 주 1. 우리나라 인상률은 전년 대비 인상률 수치(18.7~12월 보험료율 인상률은 1~6월 대비 인상률)
  - 2.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18.7월 이전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였으나, '18.7월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100%로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경총 자료 재가공

- 소득월액 상한액은 우리나라와 대만의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 과기준이 매우 상이하여 비교가 어려움.
  - 우리나라는 연간 보수외 소득을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에 달하는 금액'('21년 월 352만원)을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상한으로 규정
  - 대만의 추가보험료는 특정 기간에 걸친 '일련의 수입총액'이 아닌, 각 '개별 수입액'에 대해 부과되며, 소득사유별로 하한액을 넘은 소득\* 중 상한액 이하의 금액\*\*만 추가보험료 납부
    - \* 예) 이자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는 각 계좌의 합산금액이 아닌 하한액 이상의 이자가 지급된 계좌에 대해서만 부과 (하한액 이하의 이자가 발생한 계좌는 미부과)
    - \*\* 소득사유별 상한(단일 수입 기준): 월급의 4배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100만 대만달러, 파트타입급여·주식배당금·이자수익·임대소득은 1천만 대만달러

## 3 시사점

## ① 건강보험료율의 안정화와 보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필요

- 건강보험료는 임금인상에 따라 매년 자동 인상되는 만큼 자동인상분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건강보험료율의 조정은 중장기적 경제 상황과 건보재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이 일본,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1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 일본은 매년 도도부현별로 보험료율을 변경하지만 '12년 이후 평균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며, 독일은 건강보험료 율을 5~10년 단위로 지속가능한 성장률(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결정
-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결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 필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있으나, 세부 논의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결정된 보험료율만 발표하고 있어 위원 회의 책임성, 투명성 등이 매우 낮은 상황
  -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인상안, 가입자 및 공급자 요구안, 공익 중재안 등 각계 입장, 논의 경과, 최종 표결 결과 등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필요

##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 축소 등 부과체계 합리화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368.2배로 일본 24.0배, 대만 12.4 배에 비해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이 매우 과도한 수준으로, 상·하한액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

- 우리나라의 과도한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보험 수혜자와 부담자의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수혜자 과다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 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 유발
- 실제로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보험 수혜 자와 부담자 간 불일치 현상 심각
  - \* 보험료 수준 하위 20%(1분위)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1,57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13만 4,947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85.80배였고, 상위 20%(5분위) 계층은 1인당 월 평균 31만 6,09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 8만 3,262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 수준이 0.26배(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기준, ; 건강보험공단, 2020.8월)

## (표 18) 2019년 보험료 수준별(5분위) 보험료 부담 및 급여현황(적용인구 1인당 기준)

(단위 : 원, %)

		1인당 월평균						
분위	적용인구	보험료 (A)	급여비 (B)	비 (B/A)				
1	9,381,273	1,573	134,947	85.80				
2	9,381,274	3,974	124,664	31.37				
3	9,381,274	33,731	107,805	3.20				
4	9,381,274	113,571	82,133	0.72				
5	9,381,274	316,095	83,262	0.26				
전체	46,906,369	93,789	106,562	1.14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2020.8.25.

- 또한, 사회보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5만 원)은 소득재분배 수준을 넘어 일부 직장가입자(고소득층)에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고려하여하향 조정할 필요
  - \* 우리나라의 '21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705만원)은 일본(141만원)의 5.0배, 독일 (95만원)의 7.4배, 대만(86만원)의 8.2배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
  - 건강보험이 경제적 약자에게도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

- 그러나 동질의 의료서비스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과 측면을 넘어 고소득 직 장가입자에 대하여 징벌적 수준에 가까운 비합리적 보험료 부과
-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보다 낮지만,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된 보험료 상한액 탓에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보험료 역전현상 발생

#### [ 우리나라의 비합리적인 상한선으로 인한 한일 독 보험료 역전현상 예시 ]

- ▶ (Case 1) '21년 월 1,382만원(연 1억 6,584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동일한 소득의 독일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 납부
- ▶ (Case 2) '21년 월 2,060만원(연봉 2억 4,726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우리나라 근로자는 동일한 소득의 독일, 일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건강보 험료 납부

〈표 19〉 2021년 건강보험료 역전현상 시뮬레이션

	구분	한국	독일	일본
 보험료율		6.86% 14.60%		10.00%
보험료 상한		7,047,900원	948,054원	1,413,491원
 월급	소득×보험료율	960,400원	2,044,000원	1,400,000원
1,400만원 수령시	실제 보험료 납부액	960,400원	948,054원 (상한 적용)	1,413,491원 (상한 적용)
 월급	소득×보험료율	1,440,600원	3,066,000원	2,100,000원
2,100만원 수령시 	실제 보험료 납부액	1,440,600원	948,054원 (상한 적용)	1,413,491원 (상한 적용)

주 : 일본은 부과소득 등급표에 따라 135.5만엔 이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소득이 139만엔이므로 월 1,400만원(137.6만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상한 적용됨.

○ 상한액 조정 기준도 현재 근로자 임금 인상,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설계되어 있으나 독일·일본과 같이 근로자 임금 인상에만 연동되도록 변경될 필요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 상한액이 과도하게 높아진 이유는 상한액 기준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하면서 상한액 수준에 근로 자임금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이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일본은 보수월액이 상한액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대비 1.5% 이상인 경우 상한 구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16년부터 변화가 없으며, 독일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을 매년 근로자 임금수준 변화에 맞춰 인상하면서 '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2.7% 수준에 불과
- 이외에 일본·독일은 부과하지 않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도 계획된 부과대상 확대를 재검토하고, 대만에 비해 3.3배 높은 소득월액 보험료 율도 현실화해야 함.
  - 고령화, 소득양극화 등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다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의 추가 확대\*, 소득월액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
    - \* 현재 연 3,400만원 이상에서 '22.7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자로 건강 보험료 부과 확대 예정

## ③ 국고지원 상시화 및 규모 확대를 통한 가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 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22년 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17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2%로, 독일 14.6%에 미치지 못하며, 일본 27.4%('17년), 프랑스 52.3%('18년), 대만 23.1%('16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사회보장 부담 증가,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 에 불과한 일반회계 지원규모도 확대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함.

〈표 20〉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

구분	한국('17)	독일('17)	일본('16)	프랑스('18)	대만('16)
기준	보험료 수입	보험료 수입	건강보험 수입	건강보험 수입	보험료 수입
지원비율	13.2%	14.6%	27.4%	52.3%	23.1%

자료 : 건강보험연구원, 주요국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추세, '20.8월

끝.

## [첨부1] 일본, 독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 1 일본 건강보험제도 개요

- (형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병립된 사회보험 방식
- **(도입과정)** 1922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1961년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
- **(특성)** 조합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으로 재원 조달
- (유형) 일본 건강보험은 단일 또는 일원적인 제도 체계가 아니라 복수의 제도, 복수의 운영주체(보험자)에 의한 다원적 제도로, ① 직장보험, ② 지역보험, ③ 고령자의료 등 3가지로 구분
  - (직장) 대기업 근로자가 주로 가입하는 조합 관장 건강보험\*, 중소 기업 근로자가 가입하는 정부(전국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으로 구성
    - \* 7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조합 관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단일기업이 설립하는 조합, 동종업계기업들이 합동으로 설립한 조합 등이 있음.
    - \*\* 건강보험법에 의거 직접 보험조합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와 가족 가입
  - (지역) 지역 단위로 보험집단을 형성하는 보험
  - (고령자의료) 75세 이상 고령자(후기고령자)에 근거해 형성

## 〈 일본 건강보험 조합별 특성 〉

구분		지역보험		
十正	정부 관장	조합 관장	공제조합	(시정촌)
 보험자수	1개	1431개	85개	1,717개
가입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가입자수	3,510만명	2,935만명	900만명	3,466만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2017), 2016년 후생노동백서 자료 추정

## 2 독일 건강보험제도 개요

- (도입과정) 1883년 근로자질병보험법 제정으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 '07~'09년 개혁을 통해 조합별 보험 운영은 유지되나, 재정은 '건강기금'으로 통합 운영
  - 건강보험 재정통합 전에는 질병조합마다 보험료율을 따로 결정 (15~17%)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후에는 모든 질병조합이 동일한 소득기준과 보험료율로 보험료 부과
- (가입의무) '21년 6만 4,3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 견습생, 연금 수급자 등은 공적 건강보험 강제 가입, 6만 4,350유로 초과자는 공적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 (특성) 사회보험 방식의 조합주의 형태로 운영되며, 보험료로 재원 조달
  - 공적 건강보험 재원은 '건강기금 할당금(보험료와 연방보조금)'과 질병조합가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로 구성\*
    - \* 각 질병조합에서 징수된 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모아져 각 질병조합에 할당금으로 분배되고, 건강기금으로부터 배분받은 할당금으로 지출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질병조합은 독자적으로 추가보험료 징수

## <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GKV) 재원조달 구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2017

○ **(가입현황)** '19년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는 7,305만명(전체 인구 대비 87.8%)에 달하며, 민간보험 가입자 873만명(10.5%), 기타(군인, 경찰 등 특수보험, 미가입자) 138만명(1.7%)로 구성

## ③ 대만 건강보험제도 개요

- (특성) 우리나라와 유사한 단일 의료 보장방식, 전 국민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제도(보험자는 중앙건강보험국)
- **(도입과정)** '50년 노공보험 실시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95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13년 2세대 건강보험 도입\*
  - \* 노사정 보험료 분담비율이 가입자 유형별로 다양해지고,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신설 등으로 재정안정화 도모
- (재원) 보험료와 국고지원(법적 의무비율은 보험료의 36%)으로 운영
- (가입자유형) 직업군에 따라서 가입자 유형을 6개로 구분·운영하며, 유형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 노사정 보험료 분담비율 등이 상이
  - 유형(1): 공공·민간기업 소속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 유형②: 직종별 협회 회원, 원양어선 선원
  - 유형③ : 농어민협회 회원
  - 유형④ : 군인, 군사학교 학생 등
  - 유형(5) : 저소득 가구 구성원
  - 유형⑥ : 퇴역군인, 군인유가족, 기타

## 〈 대만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가입자수 [19.6월 기준] 〉

(단위: 만명, %)

구분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유형④	유형(5)	유형⑥	계
피보험자	1,407	349	218	10	29	366	2,389
비율	58.9	15.0	9.1	0.4	1.2	15.3	100.0

자료: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2019-2020 전민건강보험연보

## [참고2] 일본, 독일, 대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1 일본 직장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 일본은 크게 정부 관장 건강보험과 조합 관장 건강보험으로 구분
    - 정부 관장 보험은 각 도도부현에서, 조합 관장 보험은 조합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3.0~13.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변 경 시에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 필요
    -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되는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표준보수월액은 두 보험이 동일
    - 정부 및 조합 관장 건강보험은 노사가 보험료의 1/2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합 관장 건강보험은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높일 수도 있음.
  - (보험료 산정방식) 월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당해연도 보험료율
    - (보수월액) 기본급,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현금 또는 현물)과 연 4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 (표준보수월액)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3 개월간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보수월액을 일정 구간별로 구분한 표준보수월액 등급표\*에 따라 적용
      - \* 1~50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하한)은 보수월액이 63,000엔 이하일 경우 표준보수 월액 58,000엔 적용, 50등급(상한)은 보수월액이 1,355,000엔 이상일 경우 표준보 수월액 1,390,000엔 적용
    - (정부 관장 보험료율)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1년 47개 현 평균 10.0%로 '12년 이후 변화 없음.
    - (조합 관장 보험료율) 건강보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조합 평균 보험료율은 '21년 9.23%로 정부 관장 보험료율보다 낮으며, '17년 (9.17%) 대비 0.7% 인상되어 큰 변화 없음.

#### <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가입자 최저·최고보험료 >

		최저보험료		최고보험료			
구분	최저 도도부현	최고 도도부현	평균	최저 도도부현	최고 도도부현	평균	
표준 보수월액	58	,000엔 (1등i	급)	1,390,000엔 (50등급)			
보험료율	9.50% (니가타현)	10.68% (사가현)	10.0%	9.50% (니가타현)	10.68% (사가현)	10.0%	
보험료	5,510엔	6,194.4엔	5,800엔	13,205엔	14,845.2엔	13,900엔	

자료 : 全国健康保険協会 ; 경총 재가공

#### 〈 정부/조합 관장 건강보험 직장기입자 평균 건강보험료율 추이 비교 〉

(단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_ 정부 관장 평균		변화없음.				
 조합 관장 평균	9.17	9.21	9.22	9.22	9.23	0.7%

- 주 1. 일본 정부 관장 보험료율은 全国健康保険協会, 保険料率の変遷('21.5) 인용, '09.9월부터 도도부현 (광역자치단체) 단위 보험료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47개 현 평균 보험료율 활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보면 '17~'20년 10.02%, '21년 10.01%)
  - 2. 일본 건강보험조합 평균 보험료율은 健康保険組合連合会, 令和3年度 健康保険組合 予算編成状況 について('21.4월) 자료에서 인용

## ○ 월 보험료 상한액 계산

- (계산식) 월 보험료 상한액 = 표준보수월액 50등급(139만엔) × 당해 연도 보험료율
- '21년 월 보험료 상한액은 '표준보수월액 50등급(139만엔) × 평균 보 험료율 10.0%'로 계산한 월 13만 9,000엔
  - ※ 일본의 표준보수월액 상한(50등급)은 139만엔으로 '16년 이후 변화가 없고, 평균 보험료율도 '12년부터 10.0%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월 보험료 상한액도 '16년부 터 불변

## ② 독일 법정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

- **(가입형태)** 독일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가입자, 임의가입자, 가족가입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의무·임의가입자) 의무가입자는 평균소득이 건강보험 의무가입 한 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임의가입자가 됨.
  - (가족가입자) 의무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월 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를 요건으로 함.
- (보험료 산정방식) 월 보험료 = 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의 범위) ▲의무가입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보수(임금), ▲법정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급여, ▲연금과 유사한 수입, ▲법정 연금보험 또는 연금에 추가하여 얻는 근로소득
    - \* 출처 : 독일연방정부 Social Code (SGB) Book Five (V)-법정 건강 보험 §226 Beitragspflichtige Einnahmen 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r
  - (보험료율) 법정 '일반보험료율(Allgemeiner Beitragssatz)'과 질병조합별로 재정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추가보험료율'(Zusatzbeitragssatz)이 있음.
    - ▶ **(일반보험료율)** 독일의 '일반보험료율'을 '15년부터 14.6%로 유지됨.
      - \* 건강기금 도입 이전까지 각 질병조합들 간의 보험료율은 15~17%로 차이가 있었으나, '09년 건강기금 설립 이후 보험료율이 15.5%로 통일되고, '15년부터 14.6%로 조정
    - ▶ (추가보험료율) 질병조합은 건강기금으로부터 배분받은 할당금 으로 지출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보험료 외에 추가보험 료를 부과할 수 있음. 추가보험료는 '평균 추가보험료율'로 계산 되어 부과되며, '21년 조합별 추가보험료율은 평균 1.3%
      - ※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추가보험료율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서, 보험료율 수준, 보험료 상한 등 비교 시 제외

#### 〈 독일 일반보험료율과 조합별 추가보험료율 추이 〉

(단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일반보험료율	14.6					변화없음.
조합별 추가보험료율	1.1	1.0	0.9	1.1	1.3	18.2
합계보험료율	15.7	15.6	15.5	15.7	15.9	1.3

주 : 추가보험료율의 경우 '17~'18년은 근로자가 전액부담했으나, '19년부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자료 : 독일 Spitzenverband, Rechengrößen und Grenzwerte im Versicherungs - und Beitragsrecht für das Jahr, 연도별 ; 독일연방정부 Social Code (SGB) Book Five (V)-법정 건강 보험 § 226 Beitragspflichtige Einnahmen 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r

## - (보험료 산정방식\*) 근로자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

- \* '17년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p96~98)'에서 인용
- ▶ (월 450유로 미만) 보험료율 13.0% 적용(사업주 전액부담)
- ▶ (월 450.1~850유로) 일반보험료율 14.6% 적용(사업주 50% 부담, 근로자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
- ▶ (월 850.1유로 이상) 일반보험료율 14.6% 적용 (노사 50%씩 부담)

## ○ 월 보험료 상한액 계산

- (계산식) 부과소득 상한액 × 당해연도 보험료율
- '21년 월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 4,837.50유로 × 일 반보험료율 14.6%\*'로 계산한 월 706.3유로
  - \* 독일 법정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일반보험료율은 '15년부터 14.6%로 유지 중

#### 〈 독일 법정 건강보험의 부과소득 상한액과 보험료 상한액 〉

(단위: 유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월 부과소득 상한액	4,350.0	4,425.0	4,537.5	4,687.5	4,837.5	11.2%
(인상률)	(2.7)	(1.7)	(2.5)	(3.3)	(3.2)	_
월 보험료 납부 상한액	635.1	646.1	662.5	684.4	706.3	11.2%

주 : 월 보험료 납부 상한액 계산 시 일반보험료율만 감안(추가보험료율 제외)하여 산출

자료: 독일 연방정부 Beitragsbemessungsgrenzen(법령고시 참고)

## ③ 대만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 대만 건강보험은 '표준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
  - (표준보험료, standard premium) 우리나라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유사한 형태로 월 급여소득에 대해 부과
  - (추가보험료, supplementary premium) 우리나라의 소득월액 보험 료와 유사한 형태로 급여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과
- 직장가입자(유형①) 부과체계
  - **(표준보험료 산정방식)** 표준 월급여 × 보험료율 × '노사정 분담율' × (1+피보험자수)
    - ▶ (표준 월급여) 가입자의 월 급여(salary)을 기준으로 48등급으로 분류된 표준 월급여 등급표\*에 따라 표준 월급여 산정
      - \* 1~48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하한)은 실제 월 급여가 23,800 대만달러 이하일 경우 표준 월급여 23,800 대만달러 적용, 48등급(상한)은 실제 월 급여가 175,601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표준 월급여 182,000 대만달러 적용
    - ▶ (표준보험료율) '16~'20년 5년간 4.69%로 유지되다가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21년 5.17%로 전년대비 10.2% 인상
    - ▶ (분담율) 가입자 유형① 중 직장가입자의 표준보험료 분담율은 근로자 30%, 사업주 60%, 정부 10%를 원칙으로 함.
    - ▶ (피부양자수) 근로자 부담분 산정 시 본인과 최대 3인의 피부양 자수 반영, 사업주와 정부의 부담분 산정 시 대만의 평균 부양 인구수('21년 0.60명) 반영
  - (추가보험료 산정방식) 6개 범주의 부과대상 소득 × 추가보험료율
    - ▶ (부과대상 소득) 연간 누적금액이 보험료 과세소득의 4배가 넘는 고액상여금, 파트타임급여, 전문서비스 소득, 주식배당금, 이자수익, 임대소득 등

- ▶ (추가보험료율) 추가보험료율은 추가보험료가 도입된 '13년 2.0% 였으나, '16년 1.91%로 하향 조정된 후 '20년까지 5년간 유지되다가 '21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2.11%까지 인상
- 월 보험료 상한액 계산
  - (표준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액 × 당해연도 보험료율 × 노사정 분 담율 × (1+피보험자수)
    - ▶ '21년 월 보험료 상한액은 표준 월급여 48등급(182,000 대만달러\*), 표준보험료율 5.17%, 피부양자수 3인을 반영하여 계산한 월 21,698 대만달러
      - \* 표준 월급여 상한액 182,000 대만달러는 '10년 이후 변화 없음.
  - (추가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별 상·하한은 설정\*되어 있으나, 연간 또는 월간 합산 소득이 아닌, 단일 수입액(one payment)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한 계산이 어려움.
    - \* 부과대상 소득별 하한은 2만 대만달러, 상한은 1,000만 대만달러(고액상여금과 파트타임급여에 대해서는 하한이 없음)

#### 〈 대만 건강보험 부과소득 상한액과 보험료 납부 상한액 〉

(단위: 대만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년 대비 인상률
월 부과소		변화 없음					
월 보험료 납부 상한액	피부양자 없음		12,181		12,001	13,230	8.6%
	피부양자 3인		19,863		19,684	21,698	9.2%

- 주 1. 대만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와 피부양자 반영 최 대치인 3명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
  - 2. 사업주, 정부의 보험료 부담분은 피부양자수 대신 평균 부양인구수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대만의 평균 부양인구수가 '16~'19년은 0.61인, '20년 이후 0.58인이므로 이에 따라 보험료 상한액 변동

## [참고3] 한·일·대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인액 배율 추이 비교

- (한국)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하한액 배율(상한액/하한액) 은 '17년 278.9배에서 2021년 368.2배로 급증
- **(일본)**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 상·하한액 배율은 '17~'21년 5년간 24.0배로 동일
- (대만) 대만 건강보험의 월 표준보험료 상·하한액 배율은 '17년 14.1 배에서 '21년 12.4배로 하락
  - ※ 독일은 하한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소득구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상이하여 하한선을 특정하기 어려움.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 미니잡(minijob)을 제외하고 미디잡(midijob) 소득 하한인 450.01유로 기준시 보험료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미 디잡 보험료 하한은 8.8만원으로 상하한 격차는 10.7배 추정

#### 〈 한·일·대만 보수에 대한 보험료 상·하한 및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단위 : 원)

구분		2017	20	18	2019	2020	2021		
		2017	1~6월 7~12월		2019	2020	2021		
	보험료 하한	17,136	17,472	17,460	18,020	18,600	19,140		
한국	보험료 상한	4,779,720	4,873,440	6,193,140	6,365,520	6,644,340	7,047,900		
	격차 (상한/하한)	278.9배	278,9배	354.7배	353.7배	357.2배	368.2배		
	보험료 하한	58,980							
일본	보험료 상한	1,413,491							
	격차 (상한/하한)	24.0배							
	보험료 하한	55,848	58,	483	61,407	62,337	69,294		
대만	보험료 상한	788,951	788	,951	788,951	781,831	861,848		
	격차 (상한/하한)	14.1배	13.5배		12.85	12.5배	12.48		

- 주 1. 우리나라는 보험료 상·하한액이 고시되므로 이를 활용, 일본은 표준보수월액이 제시되므로 정부 관장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보험료 상·하한액 계산
  - 2. 대만 건강보험료 상한은 피부양자 반영 최대치인 3명을 가정하여 산출, 사업주와 정부 부담분은 피부양자수 대신 평균 부양인구수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16~'19년은 0.61인, '20년 이후 0.58인이 어서 보험료 상한액이 다소 변동 ; 하한은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
  - 3. 환율은 한국은행 주요국 통화의 대 원화 환율 통계 상의 '21.4월말 환율 이용 (보수월액 상하한액 보험료 상하한액을 보다 명확히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 환율 미활용)
- 자료 : (한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일본) 全国健康保険協会, 都道府県毎の保険料率, 都道府県毎の保険料額表 (대만) 보건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 연도별 全民健康保険年報